

★ ◎

사장 방침 제907호

문서번호	택지조성팀-7142
보존기간	1년
결재일자	2015.10.28
공개여부	공개

팀 원	택지조성팀장	택지사업처장	택지사업본부장	사장
				10/28
오근우	박광균	김소겸	정현규	변창흠
협 조	개발계획1팀장 김익성			

**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를 위한
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**

서울특별시 SH공사
(택지사업본부)

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를 위한

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(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) 및 국정과제 93(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)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 결과를 보고코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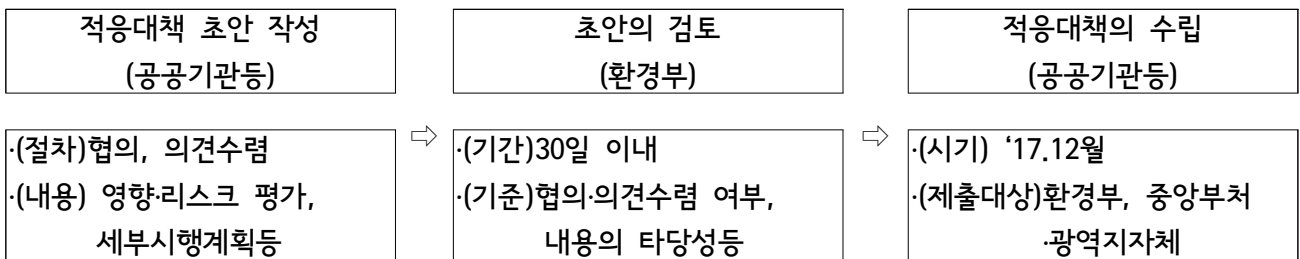
□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요

- 의의 :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시설보호, 시민안전 및 서비스 중단방지등을 위해 수립하는 중단기 대책
- 근거: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(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), 동법 시행령 제38조(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등) 및 국정과제 93(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)
- 지위 및 타계획과의 관계 :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'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정·보완('12.12)' 및 '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'13~'15년 세부시행계획'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다수의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성을 확보

상위계획	관련계획
·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('10.10) ·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정·보완('12.12) ·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'13~'15년 세부시행계획등	·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광역·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·기초 시·군·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종합계획

- 수립 및 이행주체 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지방공기업중 기후변화 영향과 개연성이 있으며,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시설을 보유·관리하는 기관으로 우리공사와 같은 광역 도시개발공사가 포함.

- 수립시기 : 각각 적응대책 수립하여 환경부와 이행현황 관리주체인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제출하며, 우리공사는 '17.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함.
- 수립범위
 - 1) 공간적 범위 : 시설물 혹은 사업장별
 - 2) 시간적 범위 : 적응대책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후의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, 피해등 영향을 예측하고, 장기 적응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과 1년 단위 연간시행계획을 수립
- 수립 및 절차



□ 향후 추진일정

- 2016년중 : 기후변화 적응 인식제고 및 적응대책 수립 지원 실무자 워크숍
- 2017.06. ~ 2017.11 :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 작성
- 2017.12 :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 환경부 제출 및 협의

□ 조치계획

-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부서 및 전담직원이 필요하고,
-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따른 관련직원(환경직)의 워크숍 참석 및 환경부 관련부서(기후변화협력과, 기후변화대응과)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추진코자 함. 끝